

1 교육기관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

비자 <유학>에 관련된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아,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⇒ 현재 재적하고 있는 교육기관 내에서 재적처를 이동해 교육을 받거나, 이제까지 재적하던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갱신 가능

⇒ 일본어교육만을 받는 경우에는 통상 2년간 재류가 인정되는데 이를 초과하더라도 갱신 가능

(귀국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2021년 1월기생까지는 당초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가장 1년 간(진학 혹은 취업 때까지) 현재 재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류기간 갱신을 인정한다.)

⇒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일에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가능

2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

<유학>의 재류자격을 가진 분이 귀국편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본국내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를 <특정활동(6개월)>으로 변경 가능

⇒ 취업 희망의 경우,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1주일에 28시간 이내 아르바이트가 인정됩니다.

※ 10월19일부터 졸업시기 및 졸업유무를 불문하고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